

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수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4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5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6. 2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9. 6. 23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수정가결

2. 제정사유

- 0 우리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.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체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0 행정기관, 주민,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함.(안 제3조, 제4조, 제8조)
 - 0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함.(안 제6조)
 - 0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7조, 제8조)
 - 0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 - 0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방법 (안 제10조)
 - 0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(안 제11조)
 - 0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 - 0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안 제13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각 항에 명시된 사항의 조례안으로
 - 0 제정사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체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0 문 :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규제가 심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

● 답 : 견해에 따라 사유재산에 대한 다사의 침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의 준칙에 따라 자연경관 보존을 하자는 측면에서 제정이 필요함.

0 문 : 본 조례안에 군수의 경관보존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

● 답 :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, 제45조의 각 항에 명시된 사항의 제한사항만 규정하기 때문에 군수의 권한 남용으로 사유재산 침해는 없을 것임.

6. 토론

0 본 수정조례안의 제2조(정의) 제4항의 군도다음에 “농어촌도” 까지 포함시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“농어촌도”는 삭제하여 수정가결

7. 심사결과 : 1999. 6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